# 등록(FAQ)

# Q1)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 휴학을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1) 휴학신청 시점, 휴학구분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금액이 달라집니다. 일반휴학인 경우, 수업일수 1/3이전 휴학시 전액대체, 수업일수 1/2선까지 2/3대체, 수업일수 2/3선 까지 반액대체, 수업일수 2/3선 익일이후에는 등록금이 소멸되어 복학시 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. 군입대휴학인 경우, 수업일수 2/3선까지 휴학시 전액대체가 되어 복학시 납부할 등록금은 없습니다.

# Q2)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해도 되나요?

A2) 휴학기간내 1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휴학구분,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학기 등록금 대체금액이 달라지므로 Q1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 Q3) 집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3) 종합정보시스템의 <등록/장학>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.

### Q4) 장학금 수혜자입니다. 휴학을 할 경우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4)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다면 장학금은 소멸되지 않으나,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.

### Q5) 가상계좌로 등록금 납부시 송금자를 부모님 명의로 보내도 가능합니까?

A5)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부모님 명의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

### Q6)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송금하는데 송금이 안되고 오류가 납니다. 왜 그러나요?

A6) 첫째, 가상계좌로 창구수납 및 계좌이체시 실납입금액과 불일치할 경우,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. 둘째, 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경우, <등록금>화면에서 납부할 경우 납부되지 않고, 계좌이체 화면에서 이체하셔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

## Q7) 상계좌로 등록금을 송금했습니다.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?

A7) 등록금 수납은행별 학적에 등록된 학생 휴대폰으로 납부확인 SMS가 발송이 됩니다. 단,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창구수납하였을 경우 발송되지 않습니다. 납부이후 1시간후 종합정보시스템-등록/장학에서 등록금납입증명을 클릭하시면 등록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## Q8) 록금 송금시 고지서 아래쪽의 학생수혜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.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

A8) 가상계좌는 1회성 납부이므로 학생수혜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,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대구은행 대구대지점(본관 1층)에서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.

# Q9)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되었습니다. 지금이라도 등록금을 납부하면 제적이 취소됩니까?

A9) 제적처리가 되고나면 취소는 불가능하고 학교를 다닐 의사가 있다면 재입학하여야 하며, 재입학 문의는 수업학적팀(053-850-5132~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Q10) 4학년 2학기 등록 대상자입니다. 3학점만 수강신청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.

##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?

A10) 정규학기(8학기) 동안은 수강신청 학점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만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되며,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이 차등 책정됩니다.

# Q11)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. 학교에 가야하나요?

A11)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매년 다음해 1월 8일에 신고가 이루어짐에따라 교육비를 납입한 다음해 1월 8일 이후에 종합정보시스템-등록/장학에서 직접 출력 이 가능합니다.

# Q12) 등록금을 납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A12) 등록금납입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-등록/장학에서 <등록금납입증명서>를 출력하시면 됩니다.

## Q13) 정규학기 초과자입니다. 등록금은 얼마인가요?

A13)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집니다. 1~3학점까지 수업료의 1/6, 4~6학점까지 수업료의 1/3, 7~9학점까지 수업료의 1/2, 10학점이상시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.

# Q14) 정규학기 초과자입니다. 등록금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?

A14)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어져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한 후 종합 정보시스템-등록/장학에서 고지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. 우편발송이 안되며, 대구은행 가상계좌로 만 납부가 가능합니다.

# Q15)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등록금 분납신청이 가능합니까?

A15) 분납신청이 안됩니다.

### Q16) 집안사정으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.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?

A16) 등록금 전액납부자 경우, 4회까지 분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. 분납신청기간에 분납신청을 하여야 하며, 1차 분납기간에 분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분납신청이 취소됩니다.

#### Q17) 분납신청과 등록금 납부연기를 같이 할 수 있나요?

A17) 분납신청자는 등록금 납부연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#### Q18)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18) 종합정보시스템-등록/장학-분납신청(대학원 경우, 종합정보시스템/등록금고지서)에서 동의서 확인 후 신청사유 입력하여 분납신청을 한 후 해당 대학(원)에서 승인처리시 분납신청이 완료됩니다.

# Q19) 등록금 반환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- A19) ① 자퇴자의 경우, 본인 신분증, 본인 통장계좌 사본을 지참하여 경리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일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(주민번호 제외), 학생 신분증, 통장계좌사본, 대리인과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시 생년월일만 표기))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② 휴학자(휴학신청기간에 휴학시)의 경우, 등록금 반환은 부모님 계좌로만 반환이 가능함으로 본인 신분증, 부모님 신분증(주민번호 제외), 부모님 통장계좌 사본, 학생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발급시 생년월일만 표기))를 지참하여 경리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2012학년도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해당학기내에 반환요청시 반환이 가능합니다.

### Q20) 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을 한번도 듣지 않고 자퇴를 하였습니다.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나요?

A20) 등록금 반환은 수업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, 학적변동발생일(휴학 또는 자퇴발생일)기준으로 등록 금 반환기준이 결정됩니다.

# Q21) 시간제등록생입니다. 9학점을 신청하고 9학점에 해당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, 수강신 청을 정정하여 5학점을 신청하였습니다. 4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반환해 주나요?

- A21) 수업학적팀에서 수강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경리팀으로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하시면 4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.
- Q22) 인적인 이유로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러 갈 수 없습니다. 계좌만 알려주면 등록금 반환이 되나요?
- A22) 등록금 반환은 경리팀으로 직접 방문을 하셔야 가능하며 경리팀을 방문하지 않고는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합니다.
- Q23) 학자금 대출로 등록한 후 휴학을 하였습니다. 대출금 이자때문에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환이 가능합니까?
- A23) 휴학신청기간내에 휴학하고 등록금 납부학기내에 반환요구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Q24) 등록을 하고 휴학을 하였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아 제적되었습니다. 재입학을 할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요?
- A24) 기 납부한 등록금은 등록금규정에 따라 반환받아야 하며 재입학시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됩니다.
- Q25) 신입생입니다.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3월 25일에 자퇴를 했습니다. 등록금은 얼마나 반환 받을 수 있나요?
- A25)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규정에 따라 입학금은 소멸, 수업료는 수업료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참고로 등록금규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르면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5/6, 학기 개시일부터 30일~60일까지 2/3, 학기개시일부터 60일~90일까지 1/2,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경과후에는 등록 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Q26)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이번 학기에 복학할 예정입니다. 납부한 등록금액보다 복학학기 등록금액이 작습니다. 인하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?
- A26) 대구대학교 등록금에관한규정에 의거 인하액을 반환해 드립니다.